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84

발의연월일: 2024. 9. 19.

발 의 자: 민홍철·문대림·조 국

허성무 • 한정애 • 김정호

이건태 · 이학영 · 이재정

손명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기관의 단계적인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이들 공공기관이 소재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그간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 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으므로,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참고로,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제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한 150여 개 기관 중 혁신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가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기관은 20여 개에 불과하였음.

이에 정부가 혁신도시 시책을 추진할 때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과 지역균

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상공공 기관의 균형적 배분에 관한 사항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	제25조(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		
혁신도시 활성화) ① (생 략)	혁신도시 활성화) ① (현행과		
	같음)		
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	②		
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			
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	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.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		
	수도권 외의 지역 간 이전대		
	상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에		
	<u>관한 사항</u>		
<u>4.</u> (생 략)	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	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		